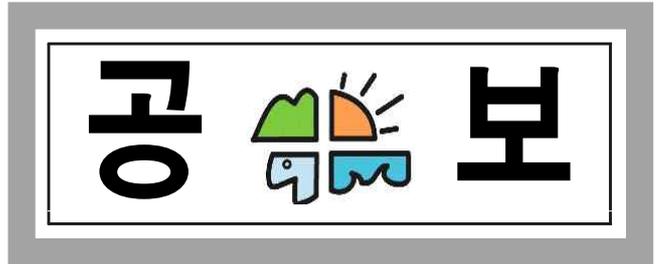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23호 2016년 10월 31일(월)

공 고

-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본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를 정의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병역법」에서 정의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인용 정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역복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현역”으로 복무한 것으로 규정 (안 제2조제2호)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기획조정담당)
- 연락처 : 033-639-2180 (FAX 033-639-238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담당(033-639-2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현역복무"란 「<u>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u>」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3조(예우 및 홍보)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병역법</u>」 제5조 제1항제1호에 ----- 따른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예우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범위에서</u>----- -----.</p>

관 계 법 령 발 취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을 성별요구도를 고려하여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성별 요구도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5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기획조정담당)
- 연락처 : 033-639-2180 (FAX 033-639-238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담당(033-639-2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속초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속초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성별요구도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u>속초시</u>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대상) ----- -- <u>속초시(이하 "시"라 한다)</u>----- ----- -----.</p>
<p>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속초시</u>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사회복지사 등의 <u>근무환경 개선</u>에 관한 사항 6. (생략)</p>	<p>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시</u> ----- ----- 2. ~ 4. (현행과 같음) 5. ----- <u>성별요구도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u>----- 6.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② (생략) ③ <u>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제11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삭제 ></p>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